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19
----------	------

2017년 4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7년 4월 4일
- 다. 회부일 : 2017년 4월 6일
- 라. 상정일 : 제27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4월 24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조욱형)

가. 제안 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조항, 추정규정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을 강화함(안 제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정한 종교단체 의료업 감면율 등에 대해 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함(안 제3조).
-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여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추정요건을 완화함(안 제5조).
-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을 정함(안 제14조).
- 조례에 의한 취득세 면제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함(안 제22조의2).

- 기타 인용조문, 반복되는 용어를 정비함(안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개정배경과 논의의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조례 추가 감면 연장과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 신설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17.1.1개정시행)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감면조례 일몰조항, 추징규정, 반복용어 정비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정하려는 것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배경은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사항 중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및 과학기술, 문화 및 관광,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진 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의 감면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안 제2조)

- 안 제2조는 관련법령의(「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1)(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조례상 장애인 자동차 감면의 일관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상위법령의(「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제4항)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사항을 제외코자 하는 것임.

※ 장애인자동차 감면은 장애급수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유공자(1급~7급)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2017.1.1.) 시행에서 시각장애인은 감면에서 제외됨.

-
-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16.12.30] [[시행일 2018.1.1]]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
<p>제2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② 생략</p>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②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가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p>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p><삭 제></p> <p><삭 제></p>
<p><신 설></p>	<p>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p>

	<p>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	--

- 현행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대체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경과 기간 설정으로 인한 행정목적과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될 소지는 없는지, 홍보의 필요성과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집행부는 감면세액 추징 유예기간(1년) 경과한 후 장애인 소유지분(1%)을 공동명의자에게 이전하여 해당 차량을 공동명의자에게 전부이전 하는 등 장애인 지원을 위한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사례) 장애인 소유의 지분 이전만으로 공동명의자는 취득세 납부 없이 차량 취득 및 가족 간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계속 감면받는 사례

ex) 장애인(1%) + 첫째아들(99%) - [1년후] → 첫째아들(100%) : 장애인 지분이전
 ex) 장애인(1%) + 둘째아들(99%) - [1년후] → 둘째아들(100%) : 장애인 지분이전

- 또한, 장애인 지분이전제도상 허점과 미비점은 없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선의의 피해자 발생 예방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다. 인용조문 및 반복용어 정리(안 제2조, 제3조, 제12조, 제13조)

- 안 제2조는(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법’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영’으로 약칭을 정비하고, 안 제3조는(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 법에서 조례로 감면율만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과 중복되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12조는(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감면규정내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의 및 추정규정을 통일하고, 표기 오류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3조는(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1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면조례의 준용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입법체계와

용어 정비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현행	개정안
<p>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① <u>「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u>제38조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u></p> <p>1.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 100분의 20</p> <p>2.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로 한정한다)의 경감률: 100분의 50</p>
<p>제12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u>「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u></p> <p>1.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p> <p>2. 3. (생략)</p> <p>② <u>「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동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u></p> <p>1. (생략)</p>	<p>제12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u>「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u> ----- ----- ----- -----</p> <p>1. ----- 설립인가----- -----</p> <p>2. 3. (현행과 같음)</p> <p>② <u>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 제114조-----</u> ----- -----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 ----- -----</p> <p>1. (현행과 같음)</p>

2.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 제1항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합병·분할은 제외한다.)

제13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같은 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2. -----
-----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 제1항 각 호-----
----- 제외한다-----

제13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따른-----
----- 법 제74조제3항제4호 -----
----- .

라. 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안 제6조)

- 안 제6조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관련 법률 규정을(2016년 12월 31일) 삭제하려는 것인바, 승용차 요일 감면 규정 삭제로 인한 감면액의 규모 및 비용감소 추계액 규모의 분석과 함께 승용차 요일제 감면에 따른 효과성 검증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감면 감소액 평균액(846백만원)*을 감안하면 감면폐지로 인한 세입증가액은 '17년 4,015백만원, '18년 3,169백만원으로 추정됨.

* (7,401백만원 - 4,861백만원) ÷ 3년

【 승용차요일제 감면액 】

(단위: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환산)
감면액	7,401	6,360	5,671	3,646 (4,861)

※'16년 환산액은 '16.1월~9월까지의 감면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임

【 승용차 요일제 일몰에 따른 비용감소 추계액 】

(단위:백만원)

구 분	'17년(추계)	'18년(추계)	비 고
비용감소(수익발생)액	4,015	3,169	

- 본 안건의 개정배경은 2003년부터 교통량 감축을 위해 도입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참여차량이 7%에 불과하여 교통량 감축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2017년 4월부터 차량 주행 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승용차요일제는 2003년 교통량 감축을 위해 처음 도입돼 2016년말 기준 70만대 가량이 참여하고 있으며, 평일(월~금요일) 가운데 하루를 스스로 정해 차량에 무선인식(RFID) 스티커를 부착한 다음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해 왔음.

※ 승용차 마일리지제는(2017년 4월 17일 시행)주행거리를 감축한 차량에 감축률·감축량에 따라 포인트를 쌓아주는 제도로써,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또는 감축량 500~1천km 구간에 해당하면 2만 포인트, 감축률 10~20% 또는 감축량 1천~2천km 구간은 3만 포인트를 적립해주며, 감축률 20~30% 또는 감축량 2천~3천km 구간은 5만 포인트, 감축률 30% 이상이거나 감축량 3천km 이상이면 7만 포인트 혜택을 부여하며, 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함.

- 다만, 승용차요일제 폐지에 따른 승용차 마일리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검토와 함께 저탄소정책 등과 연계한 감면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현행	개정안
<p>제6조(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라 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특정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는 이를 추징한다.</p> <p>1.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3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2.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p>	<p>〈삭 제〉</p>

마.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안 제5조)

- 안 제5조는(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문화지구내 권장시설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제1항 및 제2항)되나,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정하도록 규정(제3항)되어 있는 바, 감면내용에 맞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추정하지 않도록 추정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은 인사동 및 대학로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권장시설로 운영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하도록 2004년 및 2006년에 도입 되었으며, 2012년 개정시 법제심사 과정에서 조례상 모든 추정 규정 문구를 ‘직접 사용’으로 통일한 사항으로 감면 규정과 추정 규정의 충돌 방지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 직접사용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지방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현 행	개정안
제5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정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u>직접 사용</u> 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u>직접 사용</u> 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 <u>사용</u> ----- ----- ----- 2. ----- <u>사용</u> ----- ----- -----

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연장(안 제14조)

- 안 제14조는(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2년 연장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다른지방과 비교하여 서울시는 토지가격이 높고 초기 비용 부담이 큰 중소기업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 추가적인 감면혜택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 ※ 집행부는 입주시 고용·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무상임대 등을 하는 지방의 타산업단지와 비교하여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R&D 유망기업 유치와 애로 및 산업단지 조기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추가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연혁]

구 분		'14년	'15년~'16년	'17년~19년
시 행 자	조성·분양·임대용	면제	35%(조례+25%)	35% '17년(조례+25%)
	신·증축 산업용	면제	35%(조례+25%)	35% '17년(조례+25%)
입주기업	신·증축 산업용	면제	50%(조례+25%)	50%(조례+25%)
	대수선 산업용	50%	25%(조례+15%)	25%(조례+15%)

현 행	개정안
제14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추가 경감률은 취득세의 100분의 25(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로 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제14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u>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u>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 다만, 상위법령상(「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²⁾ 산업단지 등에 감면은 조례에 위임된 규정을 통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나, 금번 개정 조례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인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의 필요성은 없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집행부는 서울시 지방세 감면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 부칙 제3조를 개정할 바 있음.

- 또한, 금번 개정조례안은 감면대상 확대가 아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것으로 감면을 연장할 경우 약 71억6천만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정한다.

【조례에 의한 산업단지 감면 추계액 (단위:백만원)】

구분		'17년(추계)	'18년(추계)	비고
합 계		2,780	4,383	
사업시행자		407	-	'17년 한시적용
입주기업(신증축)	강서	2,280	4,290	마곡 산업단지
입주기업(신증축)	강서외	81	81	서울디지털, 온수
입주기업(대수선)		12	12	

- 동 조례(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내년도 세입전망이 밝지 않은 점과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세의 감면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감면기간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신설(안 제22조의2)

- 안 제22조의2는(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취득세 감면 비율을 정하는 규정으로 관련법령보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³⁾)강화된 100% 감면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는 취득세 감면비율을 85%의 감면율을 적용하면서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써 감면율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 감면 특례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이 적용되어 조례상 취득세 100% 감면 규정의 감면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를 납부하여야 함.

-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2016.12.27] [[시행일 2017.1.1]]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 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은 조례로 적용여부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는 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장 및 감면효과 극대화를 위해 감면조례의 적용시한(‘18.12.31) 만료전까지 감면 특례 제한은 적용하지 않고, 2018년 감면조례 개정시 조문별 감면 연장과 특례 적용 여부를 재검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본 개정안은 조례로 감면 특례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부칙 적용례에서 2017.1.1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개정조례 공포 전후의 세부담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22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 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19
----------	------

제출년월일 : 2017년 4월 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조항, 추정규정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을 강화함(안 제2조)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정한 종교단체 의료업 감면율 등에 대해 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함 (안 제3조)
- 다.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여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추정요건을 완화함 (안 제5조)
- 라.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
- 마.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을 정함 (안 제14조)
- 바. 조례에 의한 취득세 면제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함 (안 제22조의2)
- 사. 기타 인용조문, 반복되는 용어를 정비함 (안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원안동의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7. 2. 9.~ 2017. 3. 1.)결과: 의견없음
- (2) 신·구 조문대비표: 별도 붙임
- (3) 비용추계 등 자료: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별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 100분의 20
2.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로 한정한다)의 경감률: 100분의 50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직접 사용”을 각각 “사용”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설립인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동법 제114조”를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를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 제1항”을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 각 호”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지방세특별제한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제3호”를 “법 제74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을 “법 제9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후단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를 “법 제184조”로 한다.

제22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법 제180조”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따라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 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p> <p>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p> <p>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p> <p>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p> <p>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p> <p>3.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p> <p>4. 이륜자동차</p> <p>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p>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p>

현행	개정안
<p><u>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가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u></p> <p>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p> <p>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p> <p>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p> <p>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p> <p><신설></p> <p><신설></p>	<p><u>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u></p> <p>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p> <p>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p> <p>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p> <p><삭제></p> <p><삭제></p> <p>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p>

현행	개정안
<p>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제5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제6조(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라 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특정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한 비영업용</p>	<p>제한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 100분의 20 2.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로 한정한다)의 경감률: 100분의 50 <p>제5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사용----- ----- 2. ----- 사용----- ----- -----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같은 법에 <u>의한</u>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p>	<p>제13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따른 ----- ----- ----- 별 제74조제3항제4호 ----- ----- -----.</p>
<p>제14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추가 경감률은 취득세의 100분의 25(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로 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정한다.</p>	<p>제14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u>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u> 1. <u>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u> 2. <u>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u></p>
<p>제16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② (생략)</p>	<p>제16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u>법 제92조의2제1항</u> -----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0조(감면자료의 제출) ----- ----- ----- ----- <u>법 제184조</u> ----- -----.</p>
<p>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 ----- ----- ----- ----- <u>법 제180조</u> ----- -----.</p>
<p><신설></p>	<p>제22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u>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비용추계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으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14)이 '18.12.31.까지 연장됨에 따라 세입감소(비용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18.12.31.이므로 '18년까지의 세수효과만을 분석
-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상 최근 3년간 평균 감면액을 근거로 추계하되, 마곡산업단지(강서) 입주기업 신증축 부동산의 경우 정확한 추계를 위하여 분양현황 자료를 근거로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세입	산업단지 등 감면	△2,780	△4,383	-	-	-	△7,163

4.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비	지방세수입	2,780	4,383	-	-	-	△7,163

- 감면조례 승용차요일제 감면 규정(§6)의 일몰을 감안하면 지방세수입의 감소액은 크지 않음

※ 지방세수입증가액 : ('17) 4,015백만원, ('18년) 3,169백만원

5. 작성자 : 재무국 세제과 이국일(2133-3356)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14) : 비용발생(세입감소)

- 산업단지에 대한 조례 추가감면 규정은 '16년 신설되어 '16년 9월 기준 감면 내역은 입주기업(신증축) 1건 352백만원에 불과

※원인 : 입주기업의 경우 '14.12.31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15.12.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의 감면율(100%)을 적용받으므로 '16.1.1.이후 분양계약 체결분에 대해서만 조례 추가 감면 규정이 적용됨(법50%+조례25%)

- '17년 및 '18년 조례 감면액 추계를 위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지특법 및 조례에 의한 감면합산액을 기초로 추계

[산업단지 감면 추계액 산정]

(1) 법 및 조례에 의한 의한 산업단지 감면액

【 법 및 조례에 의한 산업단지 감면액 】 (단위:백만원)

구분	'14년	'15년	'16년 (환산)
합 계	7,665	28,536	12,228 (16,294)
사업시행자	2,603	2,287	
입주기업(신증축) 강서	4,947	26,053	11,876 (15,835)
입주기업(신증축) 강서외	83	153	352 (459)
입주기업(대수선)	32	43	

- 1) '16년 환산액은 '16.1월~9월까지의 감면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임
- 2) 음영외 부분은 감면율 100%, 음영부분은 감면율 100% 미만 포함

(2) 법 및 조례에 의한 의한 산업단지 감면전 세액

【 법 및 조례에 의한 산업단지 감면전 세액 】 (단위:백만원)

구분	'14년	'15년	'16년 (환산)
합 계	7,697	28,777	12,345 (16,460)
사업시행자	2,603	2,287	
입주기업(신증축) 강서	4,947	26,053	11,876 (15,835)
입주기업(신증축) 강서외	83	265	469 (625)
입주기업(대수선)	64	172	

(3) 조례에 의한 산업단지 추가감면 추계액 산정

【 조례에 의한 산업단지 감면 추계액 】

(단위:백만원)

구분	'14~'16년 합계	'14~'16년 평균	추가 감면율	'17년 (추계)
합 계	52,934	17,645		4,403
사업시행자	4,890	1,630	25%	407
입주기업(신증축) 강서	46,835	15,612	25%	3,903
입주기업(신증축) 강서외	973	324	25%	81
입주기업(대수선)	236	79	15%	12

(4) 감면 추계액의 적정성 검증

- 감면추계액이 가장 큰 입주기업(신증축)에 대한 감면 중 강서구(마곡산업단지) 부분은 산업단지 용지 분양내역을 근거로 산정 가능

<검 증>

① 마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729,785㎡)는 유보지 약10%를 제외한 약 656,800㎡를 '18년까지 분양예정이며, '16년말 현재 494,620㎡가 분양되었고, '17년까지 산업 시설용지의 80%, '18년까지 분양완료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임

※ ('16) 494,620㎡ → ('17) 583,820㎡ → ('18) 656,800㎡

② '17년도에는 3월, 7월, 10월 3번의 분양공고('16년말까지 13차 공고 완료)가 예정되어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약 8개월 후에 잔금이 완납되고,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므로 3월 공고분 일부까지 '17년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음

③ '16년도말 현재 불입 분양내역상 연번 59번까지 취득세 감면신고되었으므로 '17년도의 조례 추가 감면 예상액은 '16년도 분양계약분 중 미신고분 및 입주계약 분과 '17년도 3월 공고분 합계임(3월 공고분 전체가 '17년도에 잔금완납 및 취득세 신고 가정)

'16년 분양 : 40,652㎡×324만원×4%(세율)×25%(추가감면율) = 1,317백만원

'17년 분양(1) : {(583,820-494,620㎡)÷3회}×324만원×4%×25% = 963백만원

※ 분양가는 ㎡당 324만원, 취득세율 4%, 조례추가감면율 25% 적용

- 분양내역을 근거로 산출한 '17년 감면추계액은 2,280백만원으로 최근 3년 평균으로 산출한 감면추계액인 3,903백만원(3)과 차이를 보임
- 이는 '14.12.31. 지특법 개정 부칙에 따라 '15.12.31.까지 분양계약분에 대해서 개정전과 같이 100%의 감면을 해주고 있어 '15년에 분양계약이 집중되었기 때문임
- 그러므로 입주기업(신증축)에 대한 감면 중 강서구(마곡산업단지) 부분은 분양내역을 근거로 산출한 감면추계액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

(5) 감면 추계액 재계산

- 산업단지 감면 추계액 중 사업시행자, 강서(마곡산업단지)외 입주기업 신증축 및 대수선 부분은 최근 3년 평균으로 산정하여 감면 추계액을 계산

- 강서(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신증축)에 대한 감면은 분양내역을 근거로 감면추계액 계산

① '17년 : 2,280백만원* *(4)③ 금액

② '18년 : 4,290백만원**

* '17년 분양(2) : $\{(583,820-494,620\text{m}^2) \div 3\text{회} \times 2\text{회}\} \times 324\text{만원} \times 4\% \times 25\% = 1,926\text{백만원}$

'18년 분양 : $(656,800-583,820\text{m}^2) \times 324\text{만원} \times 4\% \times 25\% = 2,364\text{백만원}$

** '18년 분양분은 '18년 분양분 전체가 '18년도에 감면된다고 가정

【 조례에 의한 산업단지 감면 추계액 】 (단위:백만원)

구분	'17년(추계)	'18년(추계)	비고
합 계	2,780	4,383	
사업시행자	407	감면종료	'14~'16 평균
입주기업(신증축) 강서	2,280	4,290	
입주기업(신증축) 강서외	81	81	'14~'16 평균
입주기업(대수선)	12	12	'14~'16 평균

2.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감면(§6) : 세입증가

○ 최근 3년간 감면 감소액 평균액(846백만원)*을 감안하면 감면폐지로 인한 세입증가액은 '17년 4,015백만원, '18년 3,169백만원으로 추정됨

* (7,401백만원 - 4,861백만원) ÷ 3년

【 승용차요일제 감면액 】 (단위: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환산)
감면액	7,401	6,360	5,671	3,646 (4,861)

※'16년 환산액은 '16.1월~9월까지의 감면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임

【 승용차 요일제 일몰에 따른 비용감소 추계액 】 (단위:백만원)

구분	'17년(추계)	'18년(추계)	비고
비용감소(수익발생)액	4,015	3,169	

마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내역

○ 총 120개 필지 494,620㎡(1조 5,640억원)

(’16. 12. 30. 기준)

연번	위 치	면적(㎡)	분양가 (억원)	입주계약	분양계약
1	DP2,3 D22-1,2,3,4 D25-1,2,3,4	177,015	5,483	’12.12.13, ’13.10.30	’12.12.18, ’13.10.31
2	DP1, D19-1	18,502	580	’13.01.24, ’13.10.30	’13.03.14, ’13.10.31
3	D3-1,2,3	15,638	476	’13.05.14	’13.05.14
4	D16-1,2,4,5,6	32,099	964	”	’13.05.21
5	D34-3	3,510	105	’13.03.254	’13.3.28
6	D7-1,2,3 D9-1,2,3,4	43,116	1,423	’13.11.27	’13.12.02
7	D11-1~4	14,511	470	’16.12.23	
8	D9-5	3,605	115		
9	D17-1	1,235	40	’13.07.08	’13.07.12
10	D17-8	1,045	33	”	’13.07.12
11	D17-12	799	25	’16.8.31.	’16.9.2
12	D20-4	1,225	39	”	’13.07.10
13	D21-4	2,967	95	”	’13.07.15
14	D23-6	1,269	40	’15.03.27	’15.3.31
15	D26-1	1,146	37	’13.07.08	’13.07.15
16	D26-2	1,132	37	”	’13.07.10
17	D28-3	3,583	117	”	’13.07.15
18	D5-1,2,3,4	17,105	555	’13.10.30	’13.10.30
19	D17-9	1,061	34	”	”
20	D17-11	929	29	”	”
21	D17-14	950	30	”	”
22	D23-3	1,269	40	”	’13.10.30
23	D23-4	1,387	44	”	”
24	D26-3	1,145	36	”	”
25	D29-1	3,025	98	”	”
26	D31-2	2,600	83	”	’13.11.14
27	D31-1	3,000	97	”	’13.11.12
28	D21-8	2,202	70	”	’13.10.30
29	D16-3,7,8 D19-2,3,4	29,099	940	’14.02.13	’14.02.19
30	D17-7	951	30	”	’14.02.13
31	D23-1	1,387	45	”	’14.02.18
32	D23-5	1,268	40	”	’14.02.19
33	D21-5	2,979	95		
34	D26-4	1,129	37	’14.08.05	’14.08.05
35	D14-1,2,3,4,5	7,665	247	’14.11.19, ’15.07.10	’14.11.26, ’15.07.17

연번	위 치	면적(m ²)	분양가 (억원)	입주계약	분양계약
36	D27-6	1,526	50	'14.10.31	'14.11.04
37	D27-3	1,720	56	'14.11.19	'14.11.19
38	D17-13	1,054	34	'14.12.17	'14.12.24
39	D28-1	9,900	329	"	'14.12.26
40	D32-7	1,479	49	"	"
41	D20-8	1,225	39	'15.07.10	'15.7.30
42	D17-4	1,196	38	"	'15.7.17
43	D17-3,10	2,311	74	"	'15.7.16
44	D32-6	1,453	48	'15.9.30	'15.10.6
45	D20-7	1,046	33	"	'15.10.6
46	D4-2, 3	4,389	143	"	'15.10.7
47	D20-3	1,046	33	"	'15.10.6
48	D17-5	1,070	34	"	'15.10.7
49	D30-1, 2	4,906	160	"	'15.10.6
50	D4-6	2,226	71	'15.12.23	'15.12.30
51	D4-1, 4	4,300	138	"	'15.12.29
52	D27-4	1,937	62	"	'15.12.30
53	D20-6	1,045	33	"	'15.12.30
54	D33-5	1,397	45	"	'15.12.30
55	D23-2	1,268	41	"	'15.12.29
56	D33-1	1,335	44	"	'15.12.29
57	D33-9	1,376	45	"	'15.12.29
58	D20-1	1,045	33	'16.6.10	'16.6.16
59	D24-6	2,170	69	"	'16.6.20
60	D33-7	1,422	45	"	"
61	D4-5	2,163	69	"	'16.6.17
62	D24-3	2,065	66	"	'16.6.20
63	D33-4	1,361	44	'16.9.30	'16.10.13
64	D24-2,5	4,430	141	"	'16.10.13
65	D24-1	2,028	65	"	'16.10.12
66	D24-4	2,597	84	"	'16.10.13
67	D20-2	1,045	33	"	'16.10.12
68	D33-6	1,422	45	"	'16.10.12
69	D12-1,2	10,528	347	'16.10.31	
70	D10-15	1,086	35	'16.12.29	
71	D10-8	1,128	36	"	
72	D10-14	1,037	33	"	
73	D33-8	1,422	45	"	
74	D32-11	1,252	40	"	
75	D10-13	1,038	33	"	
76	D21-1	2,966	95	"	
77	D27-1	1,662	53	'16.12.30	
	120개 필지	494,620 (67.8%)	15,640		